

질문서면답변서

질문 회의	우강호의원 '98 행정사무감사(계5차)	답변	농업경영과장 이영균
<p>《질문요지》</p> <p>1. 정부양곡가공업지정에 따른 법규절차</p> <p>2. 시설물 설치기준</p>			

《답변》

1. 정부양곡가공업지정에 따른 법규절차
 - 가공업의 등록 신청 : 시도지사
 - 가공업의 등록 신청 서류(대규모가공업)
 -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
 -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
 -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
 - 건물사용신고필증(도지사)
 - 시설물 검사 : 시도지사 및 관할 국립농산물검사소장

 2. 시설물설치기준(1일 8시간 생산능력 기준)
 - 동 력 : 정미기, 제현장치, 고르는장치 및 기타부대시설을 동시에 가동할수 있는 마력 이상
 - 정 미 기 : 1일 15톤 이상 생산
 - 제현장치 : 고르는장치, 정미기 생산능력에 알맞는 능력이 있는 시설

 3. 정부양곡가공업자 행정처분
 - 정부가 공급한 원료곡이나, 가공한 양곡을 은닉,임의처분시
⇒ 6개월 영업정지 ~ 등록취소
- ※ 정부양곡가공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리하되
본인이 등록포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